

안산시 성인문해 기초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550
----------	------

발의연월일 : 2007. 3. .
발 의 자 : 정승현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 시민에 대한 문해학습권을 보장하여 기초적인 소양과 학습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통한 개인의 자아실현 및 주체적인 민주시민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 비문해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해교육진흥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문해교육 지원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성인문해 기초교육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나. 성인문해 기초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내지 제6조).
- 다. 성인문해 기초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내지 제8조).
- 라. 성인문해 기초교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

- 「교육기본법」 제3조,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 「평생교육법」 제6조 제1항내지 제2항,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 예산수반사항

안산시 성인문해 기초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3조, 제10조, 「평생교육법」 제6조, 제9조, 제11조에 의거 성인문해 기초교육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성인문해기초교육"이라 함은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의무교육 학령기를 초과한 성인이 가정, 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조직화된 교육 활동을 말한다.
- ② "비문해자"라 함은 의무교육인 중학교과정 이하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고 해당 학령기를 초과한 자 및 국어를 해득할 수 없으므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생활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회의 소외자를 의미한다.
- ③ "성인문해기초교육단체"라 함은 의무교육에 준하는 기초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 ④ "성인문해기초교육교사"라 함은 성인문해기초교육단체 및 시설장이 인정한 자로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성인문해 기초교육대상이란 제2조 제2항의 비문해자의 정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국적, 연령, 성별, 직업을 불문한다.

- 제4조(성인문해기초교육의 기본원칙)**
- ① 성인문해기초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비문해자의 기초적인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 ② 이 교육의 대상은 문해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지방자치단체는 성인문해기초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기초조사 실시
2. 성인문해기초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3. 성인문해기초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
4. 성인문해기초교육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5. 성인문해기초교육단체의 지원 및 지원센터 설치
6. 안산시 평생교육센터내 성인문해기초교육 전담인력 배치

제6조(공동추진) 성인문해기초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보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인문해기초교육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지방자치단체는 성인문해기초교육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9조(성인문해기초교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양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성인문해기초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기초교육교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성인문해기초교육단체에 배치된 성인문해기초교육교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성인문해 기초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550
----------	------

제안년월일 : 2007. 4. 5.
제 안 자 : 경제·사회위원장

1. 수정 이유

- 중복된 문항 및 용어를 삭제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인 평생 교육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조례 제명을 “안산시 성인문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일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명칭을 수정함.
(안 제2조, 안 제5조제5호)
- 상위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함.(안 제7조)
-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9조제2항)

안산시 성인문해 기초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성인문해 기초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 제명 “안산시 성인문해 기초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안산시 성인문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성인문해기초교육”을 “성인문해교육”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및 제4항을 삭제하며, 제3항 중 “성인문해기초 교육단체”를 “성인문해교육단체”로, “기초능력”을 “능력”으로 하여 제2항으로 한다.

①“성인문해교육”이라 함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 교육을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자에 대하여 가정·사회 및 직업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아니할 정도의 중학교 졸업수준의 문자해독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대상) 성인문해 교육대상이란 학령기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중 “문해기초교육”을 “문해교육”으로 한다.

①성인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제5조제5호를 삭제하여 동조제6호를 제5호로 하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지방자치단체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3. 성인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
4. 성인문해교육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5. 안산시 평생학습센터내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배치

제6조 중 “성인문해기초교육”을 “성인문해교육”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경비지원)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인문해교육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중 “성인문해기초교육”을 “성인문해교육”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성인문해교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양성) 지방자치단체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교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조문대비표

원안	수정안
<u>안산시 성인문해 기초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u>	<u>안산시 성인문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u>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3조, 제10조, 「평생교육법」 제6조, 제9조, 제11조에 의거 <u>성인문해 기초교육</u>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정의) (생략)</u></p> <p>① “<u>성인문해기초교육</u>”이라 함은 「<u>교육기본법</u>」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의무교육 학령기를 초과한 성인이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조직화된 교육 활동을 말한다.</p> <p>② “<u>비문해자</u>”라 함은 의무교육인 중학교 과정 이하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고 해당 학령기를 초과한 자 및 국어를 해득할 수 없으므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생활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회의 소외자를 의미한다.</p> <p>③ “<u>성인문해기초교육단체</u>”라 함은 의무 교육에 준하는 <u>기초능력</u> 향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p> <p>④ “<u>성인문해기초교육교사</u>”라 함은 성인 문해기초교육단체 및 시설장이 인정한 자로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p>	<p><u>제1조(목적)</u><u>성인문해교육</u>.....</p> <p><u>제2조(정의) (원안과 같음)</u></p> <p>① “<u>성인문해교육</u>”이라 함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 교육을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자에 대하여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아니할 정도의 중학교 졸업수준의 문자해득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 삭제〉</p> <p>② “<u>성인문해교육단체</u>”<u>능력</u>.....</p> <p style="text-align: right;">〈 삭제〉</p>

원 안	수 정 안
<p><u>제3조(대상) 성인문해 기초교육대상이란 제2조 제2항의 비문해자의 정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국적, 연령, 성별, 직업을 불문한다.</u></p>	<p><u>제3조(대상) 성인문해 교육대상이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한다.</u></p>
<p><u>제4조(성인문해기초교육의 기본원칙) ①성인 문해기초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비문해자의 기초적인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u></p> <p>②이 교육의 대상은 문해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p> <p>③(생략)</p>	<p><u>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성인문해 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u></p> <p>②..... 문해교육.....</p> <p>③(원안과 같음)</p>
<p><u>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지방자치단체는 성인문해기초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p> <p>1. 비문해자 기초조사 실시</p> <p>2. 성인문해기초교육 종합계획의 수립</p> <p>3. 성인문해기초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p> <p>4. 성인문해기초교육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p> <p>5. 성인문해기초교육단체의 지원 및 지원 센터 설치</p> <p>6. 안산시 평생교육센터내 성인문해기초 교육 전담인력 배치</p>	<p><u>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지방자치단체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p> <p>1. 비문해자 조사 실시</p> <p>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의 수립</p> <p>3. 성인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p> <p>4. 성인문해교육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p> <p style="text-align: center;">< 삭제 ></p> <p>5. 안산시 평생학습센터내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배치</p>
<p><u>제6조(공동추진) 성인문해기초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u></p>	<p><u>제6조(공동추진) 성인문해교육.....</u></p>

원 안	수 정 안
<p>제7조(경비보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인문해기초교육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p>	<p>제7조(경비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인문해교육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지방자치단체는 성인 문해기초교육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p>	<p>제8조(공공시설의 이용)<u>성인 문해교육</u></p> <p>.....</p> <p>.....</p>
<p>제9조(성인문해기초교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양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성인문해기초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기초교육 교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성인문해기초교육단체에 배치된 성인문해기초교육교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9조(성인문해교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양성) 지방자치단체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교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i>< 삭제 ></i></p>